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23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4. 3.)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상협 항만과장)

가.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수정계획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국가관리무역항인 「포항항」과 지방관리연안항 「구룡포항」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의견을 들으려는 내용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 공유수면 매립면적 : 13개소 1,493,483㎡
 - 국가관리무역항(포항항) : 10개소 1,489,283㎡
 - 지방관리연안항(구룡포항) : 3개소 4,200㎡
- 포항항(포항신항, 포항구항, 영일만항) 및 연안항(구룡포항)개발 대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전반적 의견

다. 주요내용

- 공유수면 매립 조서
 - 국가관리무역항(포항항)

용도	위 치	사 업 명	매립 구분	면 적(㎡)		증·감	비 고
				당초	변경		
계류 시설	영일만항	기타광석부두(3선석)	기 존	180,000	180,000	-	배후산업단지 지원항만
	영일만항	모래부두	기 존	27,500	27,500	-	구항에서 이전 계획
	영일만항	시멘트부두	기 존	40,000	40,000	-	구항에서 이전 계획
외곽 시설	신 항	파제제	신 규	-	1,000	1,000	신형 해군함정 접안 및 계류를 위한 정온도 확보
지원 시설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변 경	642,309	594,579	-47,730	배후단지 1-2단계 공사중
	영일만항	항만시설용부지	기 존	558,397	558,397	-	원활한 항만운영 확보
기타 시설	영일만항	수리조선부두	기 존	50,000	50,000	-	구항에서 이전 계획
	영일만항	연안여객부두(3선석)	기 존	19,854	19,854	-	구항에서 이전 계획
	영일만항	소형선부두	기 존	5,400	5,400	-	일부구간 역무선부두 이용에 따른 선석 확보
	신 항	보안부두 확장	기 존	12,553	12,553	-	신형 해군함정 접안 및 계류를 위한 부두시설 확장
합계(10개소)				1,536,013	1,489,283	-46,730	

- 지방관리연안항(구룡포항)

용도	위 치	사 업 명	매립 구분	면 적(㎡)		증·감	비 고
				당초	변경		
계류시설	구룡포항	소형선부두	신 규	-	2,000	2,000	어선 접안시설 부족
외곽시설	구룡포항	방파호안	신 규	-	500	500	연안피해 방지
	구룡포항	방파제 연장	기 존	1,700	1,700	-	항내 정온 개선
합계(3개소)				1,700	4,200	2,5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장준호)

-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내 국가관리무역항인 '포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인 '구룡포항'의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항만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화된 해운·항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포항구항 재개발에 따른 주요 부두의 영일만항 이전과 항만배후단지 확충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군 함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보안부두 확장 및 파제제 신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구룡포항의 소형선 부두 및 방파호안 설치 또한 어업 활동 지원과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대규모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공사 시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업권 침해나 생산량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 갈등이 우려되므로 인근 어업인들과의 사전 소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서

- 본 안은 포항구항 재개발에 따른 주요 부두의 영일만항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확충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된 해운·항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
- 다만, 대규모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공사 시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업권 침해나 생산량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갈등이 우려되므로 인근 어업인들과의 사전 소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구룡포항 방파제 연장의 경우 어선의 출입 및 조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6년 4월 일

포 항 시 의 회